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41호
2021.12.21.(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31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2
---	---

자치법규**[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1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22.1.13)에 따른 부서 신설,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을 위해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027명에서 19,064명으로 37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서 신설 등 인력 증원

－ (의회사무처) 4급 +1명, 5급이하 +10명

나.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 (의회사무처) 5급 이하 +26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1.13 시행예정) 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총 27명 배치 예정임 (순증 +26명, 재배치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 관									